

2012년도

## 북신안농협 미곡처리장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

### 석면 비산 농도 측정 결과 보고서

2012. 07

■ 측정기관 : (사)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타

■ 의뢰업체 : 승우산업개발(주)

## 목 차

I.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..... 1

II. 별 첨 ..... 2

[별 첨 1]. 석면 정량 분석 결과서

[별 첨 2]. 현장소재지 및 측정 장소(공사구역)

[별 첨 3]. 법적 측정 근거

# I.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

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

## 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| 접수번호  | 접수일   |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|
| 제출인   | 상호(대표자)<br>승우산업개발(주) (유동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<br>412-81-38315   |              |
|       | 주소<br>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277-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전화번호: 062-954-7600 )   |              |
| 건축물   | 건물명<br>창고시설<br>연면적( $m^2$ )<br>1288.00 $m^2$                    | 위치<br>전남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34-1 북신안농협 미곡처리장<br>작업기간<br>2012.07.07~2012.07.08(2일간) |              |
|       | 석면건축자재[길이(m) · 면적( $m^2$ ) · 부피( $m^3$ )]<br>슬레이트 1668.43 $m^2$ |   |              |
| 측정기관  | 대표자<br>박정일<br>주 소<br>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(사)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타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<br>409-82-01314   |              |
| 측정 일시 | 2012.07.07~2012.07.08(2일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|
| 측정 결과 | 시료번호  | 측정 지점   | 측정 결과(f/cc)  |
|       |   |   | 검 출석면<br>별첨1 |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별첨2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12 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|      |  |            |
|------|--|-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| 수수료<br>없 음 |
|------|--|------------|

## II. 별첨

[별첨 1]. 석면 정량 분석 결과서

### 시료(석면) 정량 분석 결과서

(Asbestos Qualitative Analysis Results)

Chain of Custody  
의뢰업체 : 승우산업개발(주)  
대표자 : 유동균  
공사명 : 북신안농협 미곡처리장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 
채취장소 : 전남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34-1 북신안농협 미곡처리장 내 공사구역  
측정일 : 2012.07.07  
의뢰일 : 2012.07.09

Lab Information  
분석기관 : (사)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타  
주소/연락처 :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534번지 / 전화 062)956-9013 / fax 062)956-9018

#### 고형시료(석면) 정성(定性) 분석 결과

| 측정일    | 시료 No. | 측정지점          | 총유량(l) | 측정 결과<br>[f/cc]<br>(기준 0.01) | 초과여부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07월07일 | #1     | 부지경계선1        | 2400l  | 검출한계 0.002이하                 | 미만   |
| 07월07일 | #2     | 부지경계선2        | 2400l  | 0.00153                      | 미만   |
| 07월07일 | #3     | 부지경계선3        | 2400l  | 0.00204                      | 미만   |
| 07월07일 | #4     | 부지경계선4        | 2400l  | 검출한계 0.002이하                 | 미만   |
| 07월07일 | #5     | 위생설비 입구       | 400l   | 검출한계 0.002이하                 | 미만   |
| 07월07일 | #6     | 작업장주변<br>(실외) | 1200l  | 검출한계 0.002이하                 | 미만   |
| 07월07일 | #7     | 폐기물 반출구       | 400l   | 0.0061                       | 미만   |

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타



[별첨 1]. 석면 정량 분석 결과서

## 시료(석면) 정량 분석 결과서

(Asbestos Qualitative Analysis Results)

Chain of Custody

|        |  |
|--------|--|
| 의뢰업체 : | 승우산업개발(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표자 :  | 유동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사명 :  | 북신안농협 미곡처리장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               |
| 채취장소 : | 전남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34-1 북신안농협 미곡처리장 내 공사구역 |
| 측정일 :  | 2012.07.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뢰일 :  | 2012.07.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Lab Information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분석기관 :   | (사)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소/연락처 : |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534번지 / 전화 062)956-9013 / fax 062)956-9018 |

### 고형시료(석면) 정성(定性) 분석 결과

| 측정일    | 시료 No. | 측정지점          | 총유량(l) | 측정 결과<br>[f/cc]<br>(기준 0.01) | 초과여부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07월08일 | #1     | 부지경계선1        | 2400l  | 검출한계 0.002이하                 | 미만   |
| 07월08일 | #2     | 부지경계선2        | 2400l  | 0.00153                      | 미만   |
| 07월08일 | #3     | 부지경계선3        | 2400l  | 0.00153                      | 미만   |
| 07월08일 | #4     | 부지경계선4        | 2400l  | 0.00153                      | 미만   |
| 07월08일 | #5     | 위생설비 입구       | 400l   | 검출한계 0.002이하                 | 미만   |
| 07월08일 | #6     | 작업장주변<br>(실외) | 1200l  | 0.00306                      | 미만   |
| 07월08일 | #7     | 폐기물 반출구       | 400l   | 검출한계 0.002이하                 | 미만   |

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타



[별 첨 2]. 현장 소재지 및 측정장소(공사구역)

| 북신안농협 미곡처리장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– 12.07.07 (1일차)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#5   | #7                    | #1               |
| #6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정미 공정동   | 미곡처리장<br>지붕           | #3               |
| #2   | 8900                  | 9200             |
|  | 611000                | 13000            |
| ※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해당 공사 구역 |                       | #4               |
| 석면 물질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68.43m <sup>2</sup> | 성상/형태            |
| 측정 지점  | 부지 경계선                | #1 ~ #4 (4point) |
|  | 위생설비 입구               | #5 (1point)      |
|  | 작업장 실외                | #6 (1point)      |
|  | 폐기물 반출구               | #7 (1point)      |
| 총 계  | 7 POINT               | 슬레이트             |

[별 첨 2]. 현장 소재지 및 측정장소(공사구역)

| 북신안농협 미곡처리장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– 12.07.08 (2일차)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#5   | #7                    | #1               |
| #6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정미 공정동   | 미곡처리장<br>지붕           | #3               |
| #2   | 8900                  | 9200             |
|  | 611000                | 13000            |
| ※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해당 공사 구역 |                       | #4               |
| 석면 물질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68.43m <sup>2</sup> | 성상/형태            |
| 측정 지점  | 부지 경계선                | #1 ~ #4 (4point) |
|  | 위생설비 입구               | #5 (1point)      |
|  | 작업장 실외                | #6 (1point)      |
|  | 폐기물 반출구               | #7 (1point)      |
| 총 계  | 7 POINT               | 슬레이트             |

---

## [별 첨 3]. 법적 측정 근거

### 석면안전관리법

<법률 제10613호>

#### 제2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)

①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을 하는 자(이하 “석면해체 · 제거업자”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(이하 “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”이라 한다)을 지켜야 한다.

② 석면해체 · 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,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별첨: 측정하지 아니한 자 / 500만 원이하 과태료>

<별첨: 측정결과 제출하지 아니한 자 / 200만원이하과태료>

###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

<환경부령 제452호>

#### 제38조(석면해체 · 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)

① 석면해체 · 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.

3. 측정 시기: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

② 석면해체 · 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---

# 석면 해체 · 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

<환경부고시 제2012-79호>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고시는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시료채취 시기

### 제3조(시료채취 시기)

① 석면 해체 · 제거 관련 작업의 시료채취 시기는 개별 석면 해체 · 제거 작업장과 재개발 · 재건축 · 재정비촉진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시료채취 지점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.

③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.

1.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: 부지경계선, 위생설비, 해체 · 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 · 외, 음압기, 폐기물 반출구
2. 석면 해체 · 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해체 · 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약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.

## 제3장 시료채취 지점선정

### 제4조(시료채취 지점 선정 기준)

① 시료채취지점은 측정대상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을 측정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며, 작업장에서 공기가 유입·유출되는 곳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7.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, 시료측정위치 등을 별표1과 같다.

## <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[별표 1]

## <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| 구분   | 지점      |    | 지점수       | 시료측정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작업 중 | 부지경계선   |    | 4개 이상     | 부지경계선<br>높이 1.2-1.5m              | -  |
|      | 위생설비 입구 |    | 전수(1개 이상) | 위생설비 입구<br>높이 1.2-1.5m<br>거리 1m이내 | -  |
|      | 작업장 주변  | 실내 | 1개 이상     | 작업장 주변<br>높이 1.2-1.5m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</li> <li>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</li> </ul> |
|      |         | 실외 | 1개 이상     | 해당 건축물 외부<br>높이 1.2-1.5m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</li> <li>- 음압기 설치 시 제외</li> </ul>      |
|      | 음압기     |    | 전수(1개 이상) | 음압기 공기 배출구<br>0.3-1m이내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</li> </ul>  |
|      | 폐기물 반출구 |    | 전수(1개 이상) | 폐기물 반출구에서<br>1m이내, 높이 1.2-1.5m    | -  |

[별표 2]

<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·제거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>

| 구분       | 지점       |        | 지점수   | 시료측정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작업 중     | 부지경계선    |        | 4개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지경계선<br>높이 1.2-1.5m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| 위생설비 입구  |        | 전수(1개 이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생설비 입구<br>높이 1.2-1.5m<br>거리 1m이내   | -  |
|          | 작업장 주변   | 실내     | 1개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작업장 주변<br>높이 1.2-1.5m               | 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<br>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|
|          |          | 실외     | 1개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건축물 외부<br>높이 1.2-1.5m            | 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<br>- 음압기 설치 시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음압기      |        | 전수(1개 이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음압기 공기 배출구<br>0.3-1m이내              | 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 |
|          | 폐기물 보관지점 |        | 전수(2개 이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폐기물 보관소 주변,<br>1m이내,<br>높이 1.2-1.5m | 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 |
|          | 폐기물 반출구  |        | 전수(1개 이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폐기물 반출구에서<br>1m이내, 높이 1.2-1.5m      |  |
| 거주자 주거지역 |          | 2개소 이상 | 해체·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-3m,<br>높이 1.2-1.5m | 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                    |  |